

번호 11-2

제 목	국문	한국 및 미국의 고엽제 관련 정책 고찰			
	영문	Review of Korean and American policy related Agent Orange for veterans			
저 자 및 소 속	국문	박웅섭 ¹⁾ , 오희철 ²⁾ , 정상혁 ¹⁾ ¹⁾ 관동의대 예방의학교실, ²⁾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영문	¹⁾ Woong-Sub Park, ²⁾ HeeChoul Ohrr, ¹⁾ Sang Hyuk Jung, 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표자 박웅섭	일반회원 (○) 전공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목적</p> <p>본 연구는 국가보훈처에서 의뢰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연구의 일부로서, 미국의 고엽제 관련 보훈제도와 우리나라의 고엽제 관련 보훈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 고엽제 관련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는 1998년 11월 25일부터 2001년 10월 30일까지 3년 동안 수행될 예정이며 본 연구결과는 그 1차년도 중간 연구 결과이다.</p> <p>2. 연구 방법</p> <p>미국의 고엽제 관련 정책의 조사를 위하여 미국 보훈부 인터넷 사이트(http://www.va.gov)를 검색하여 고엽제 등록 및 의료지원에 관한 지침서, 미 보훈부 고엽제 센터의 고엽제 조정관이 작성한 고엽제에 관한 쟁점에 대한 인쇄물, 미 보훈업무 안내 핸드북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ic Science: NAS)에서 출판한 Agent Orange Update 1998의 정책부분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밝혀진 미국 보훈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p> <p>우리나라의 고엽제 관련 정책의 조사를 위하여 보훈처 의료지원과 담당인력으로부터 법률과 그 시행 지침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2개의 보훈지청 담당관 한국보훈병원 고엽제 담당의사 및 고엽제 전담 원무과(원무3과) 관련자, 그리고 위탁병원의 원무과 직원과 면담과정을 거쳤다.</p>					

3. 연구결과

우리나라 및 미국의 고엽제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 등록자격

미국의 고엽제 등록사업(Agent Orange Registry)은 역학조사의 기본자료를 확보하고자 월남전 참전 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보상 및 지원자 결정을 위하여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 무료진료 서비스의 범위

미국의 경우 보상의 범위는 우리나라보다 제한적이나 무료진료의 범위는 우리나라보다 넓은 것을 파악되고 있어 현재 미국으로 확인과정 중에 있다.

- 고엽제 담당 전문인력의 유무

우리나라에서는 예산과 업무의 어려움으로 고엽제 전문 담당인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일선 보훈병원과 담당 시설에 고엽제 환자의 검진과 치료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전문의(Environmental Physician)와 고엽제 조정관(Agent Orange Coordinator)이 전문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추적관리 프로그램

미국의 경우 검진자를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별도의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추적관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 보훈 보건의료시설의 수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토의 면적과 경제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미국은 172개의 병원, 439개의 외래진료소, 131개의 간호요양소, 206개의 베트남센터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5개의 보훈병원과 66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다.

- 고엽제 후유증 인정 질병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있는 11개의 질병 이외에도 버거씨병과 급성 말초신경병에 대해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있다.

- 고엽제 2세 환자의 인정 범위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선천적 척수 이분증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고엽제 참전군인 모두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후유증 환자의 자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4. 고 찰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엽제 관련 정책을 비교고찰함에 있어 다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력 및 징집제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조사된 미국의 제도가 문서상으로 해석된 것으로만 한정되므로 쟁점사항이 될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역학조사와 정책 고찰연구를 통하여서도 이미 확대된 복지정책은 축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힘의 대결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역학연구가 될 수 있도록 기본자료를 축적시켜 나가야 한다.